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1-학인-00022 학교 기숙사 부적절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의 아버지)
피 해 자 ○○○(○○○○학교 ○학년)외 학생들
피 신 청 인 ○○○○학교장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기관 경고' 처분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이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은 학생을 학교 구성원의 주체가 아닌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인습과 낮은 인권 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의 기숙사 운영 체계(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및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라. 전라북도 내 기숙사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기숙사 생활 수칙을 인권우호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맞게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른 기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숙사 운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기숙사 생활 규정('기숙사 학생 자치회 회칙' 제10조)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인권 우호적으로 다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관련자(교원, 사감 등)에게 정기적인(학

기당 1회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숙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은 학생을 학교 구성원의 주체가 아닌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인습과 낮은 인권 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 개요

가. 접수일자: 2021. 12. 17.(금)

나. 신청인: ○○○(○○○ 학생 아버지)

다. 피해자: ○○○(○○○○학교 ○학년)외 학생들

라. 피신청인: ○○○(○○○○학교장)

마. 신청요지:

1) 2021. 12경 ○○○○학교 기숙사 수칙에 따라 ○○○(○학년) 외

3명의 학생이 기숙사 일주일 퇴사 조치를 당하였다.

2) 기숙사 퇴사 조치의 근거인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을 수정할 당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수정된 내용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관련 규정

[붙임 1] 과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해자의 주장

신청 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학교는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매년 기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기숙사 운영계획안에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2장, 10조로 구성)을 포함하였다.

2) 2021. 2. 경 「2021학년도 기숙사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21. 9. 2. 「2021학년도 기숙사 운영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중 제10조(자치회 회원 규칙)를 수정하였다.(수정 내용은 붙임 문서 2. 참조)

3) 기숙사 생활 규정1)(기숙사 학생자치회 제 10조) 수정은 학부모대

1) 기숙사 생활 규정은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6조의 ‘기숙사 생활 수칙’을 의미하며, ○○○○학교가 수립한 “2021학년도 기숙사 운영 계획(안)”에 포함된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중 제10조(자치회 회원 규칙)를 지칭함.

표와 반대표 학부모들의 요청(학생의 수면권 보장 요구)으로 진행하였다.

4) 기숙사 생활 규정 수정 이후 46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 규정 위반으로 1주일 퇴사 조치되었다.

5) 「2021학년도 기숙사 생활규정 개정(수정)」 과정2)은 다음과 같다.

순	일자	내용	비고 1	비고 2
1	8. 20. ~ 8. 27.	2021 기숙사 생활 규정(수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8월 27일, 가정통신문 배부(전 학생, 학부모) ※ 수정한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제10조(자치회 회원 규칙), 1~6번 위반시 일주일 퇴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임.	
2	8. 20. ~ 8. 31.	2021 기숙사 생활 규정(수정)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3	8. 27.	학부모 간담회		회의록 없음
4	8. 27.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수정)을 위한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인원 확인할 수 없음	회의록 없음
5	8. 31.	기숙사 자치 임원 회의	참석 인원 확인할 수 없음	회의록 없음
6	8. 31.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수정)을 위한 협의회	학생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 부의 부장, 차장 각 1인, 교사 2명	회의록 없음
7	9. 2.	2021 기숙사 생활 규정(수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각 반 교실에서 TV를 통해 실시	

4.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총론

2)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항은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항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라고 하였고, ④항은 학생자치조직은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도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 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 제26조(징계3)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항은 “학생의 징계

3)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함.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음.(이중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②항은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2) 학교는 매년 「기숙사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기숙사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다(기숙사 운영 규정 부재).

3) 학교는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기숙사 생활규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였는데, 이 가정통신문은 1주일 퇴사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숙사 1주일 퇴사에 동의합니다.”에 학생과 학부모가 서명하는 내용이다.

4) 학교는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수정 내용에 따라 2021. 9.부터 12.까지 회칙을 위반한 46명 학생에게 1주일 퇴사 조치를 하였고, 퇴사 조치를 당한 학생들은 1주일 동안 주거지에서 통학하였다. 퇴사자 46명의 학생 중 주거지가 ○○인 11명을 제외하고, 35명 학생은 다른 지역 거주자(○○ 13명, ○○ 12명, ○○ 2명, ○○ 3명, ○○ 4명, ○○ 1명)였다.

다. 학교 규정의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를 침해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①항은 “학교장은 기숙사가 민주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위원회, 자치회)의 구성·운영, 학생 선발기준, 기숙사비 징수·반환기준 및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③항은 “학교장은 기숙사 구성원(학생·사감 등)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우호적인 운영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같은 규정 제4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에 따라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⁴⁾(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자치회 구성·운영) ①항은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③항은 자치회의 심의 사항을 “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④항은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4)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5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⑤항은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학교는 전교생이 입사를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이나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였음.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피신청인(○○○○학교 학교장)은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기숙사운영위원회가 2021학년도 기숙사 운영 계획(안)의 문서에만 존재할 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명단,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기숙사운영위원회를 실제 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기숙사 운영 계획’에 포함된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을 ‘기숙사 생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1. 9경 ‘기숙사 생활 규정’을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8월 27일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와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수정)을 위한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에 실제 누가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회의록이 없어 협의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8월 31일에 개최한 ‘기숙사 자치임원회의’와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수정) 협의회’도 실제 누가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회의록이 없어 협의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수정)을 위한 협의회(회의) 등을 개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송한 가정통신문의 경우, 통신문의 내용상 피신청인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의견 수렴 절차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에게 가정통신문을 회신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비동의

의견) 등을 피신청인이 기숙사 생활 규정 수정 과정에서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기숙사 자치회 심의 없이 기숙사 생활 규정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기숙사 생활 규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피신청인이 기숙사 생활 규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례 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자치조직인 기숙사 자치회의 의견 제출권을 침해하였으며, 조례 19조 학교 규정의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라.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피신청인이 제시한 기숙사 생활 규정 수정 내용(‘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제10조)은 아래와 같다.

* 1~6번 사항 행위 시 1주일 퇴사

1. 12시 이후에 타호 실(자기 방 이외의 방)에 들어가는 행위
2. 12시 이후에 라면을 섭취하는 행위(라면 섭취는 11시~12시만 가능)
3.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배달 음식을 시키는 행위 포함)
4. 기숙사 내에서 12시 이후에 노래(악기)를 부르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5. 11시 10분(저녁 점호) 이후에 기숙사 무단외출을 시도하는 행위
6. 8시 20분 이후에 기숙사를 나오는 행위

위, 2021. 9. 수정한 기숙사 생활 규정에 따라 1주일 퇴사 조치된 학생은 총 46명이며, 이 중 원거리 통학자가 35명이었다. 먼저,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수정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 기숙사 생활 규정을 근거로 한 1주일 퇴사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설령,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기숙사 생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조례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규정에 따라,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교 생활 규정 제87조(징계의 원칙) ①항은 위 조례 제26조와 같이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라고 하였고, ③항은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생활 규정 제8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상벌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였다.

위 기숙사 생활 규정과 학교생활 규정을 살펴보면, 생활 공간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에서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숙사 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다를 수는 있으나, 기숙사 생활 규정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기본 취지는 ○○○○학교 생활

규정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가 밝히고 있듯이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징계 등의 절차에서의 권리를 생활 공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고, 피신청인이 수정한 기숙사 생활 규정에 따른 1주일 퇴사 조치는 학생의 징계 등의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다.

마. 소결

이 사안은 2021. 9.부터 12.까지 ○○○○학교 기숙사 생활 규정에 따라 ○○○(○학년) 외 3명의 학생이 기숙사 1주일 퇴사 조치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조치 근거인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을 수정할 당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정된 내용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한 사안이다. 이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교를 방문하여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기숙사 운영 규정, 기숙사 생활 수칙 개정 과정, 규칙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피신청인은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기숙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2021. 9.경에 이루어진 기숙사 생활 규정 개정은 ‘기숙사 학생자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강요된 동의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2021. 9. 개정된 기숙사 생활 규정을 근거로 1주일 퇴사 조치를 당한 46명의 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가 대다수(35명) 포함되어 있어, 학교 등하교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학교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였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등의 절차에서의 피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7.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 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 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

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 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 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마.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 제5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7명~15명의 범위에서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단, 교직원 위원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체 위원 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어야 한다.

-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① 학교장은 기숙사가 민주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위원회, 자치회)의 구성·운영, 학생 선발기준, 기숙사비 징수·반환기준 및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개정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기숙사 구성원(학생·사감 등)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우호적인 운영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